

◆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◆

○ 기술계 고졸(예정)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변경

기 준	변경(2020년 시행 임용시험부터 적용)
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→ 특성화고·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, 재학생은 2학년,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함	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→ 특성화고·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, 재학생은 2학년,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며, <u>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</u>

○ 기술계 고졸(예정)자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변경

-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함
- 토목직류 시험과목 중 '응용역학개론'은 '토목일반'으로, 기계직류 시험과목 중 '기계설계'는 '기계제도'로 과목명 변경
- 건축직류 시험과목 중 '건축계획', '건축구조'는 건축일반 교과의 해당 부분에서 출제
- 토목직류 시험과목 중 '측량'은 2015년 교육과정상 실무과목이므로,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

○ 장애인 편의지원 관련 점자문제지 제공 안내

- 「한국 점자 규정」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-15호)을 적용하여 문제지 제공

◆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◆

○ 기술계 고졸(예정)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 변경

기 준	변경(2020년 시행 임용시험부터 적용)
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·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- 졸업예정자: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(2021년의 경우)	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·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- <u>졸업자: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</u> - 졸업예정자: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(2021년의 경우)

- 지방직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과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, 중복접수는 불가

- 지방직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영어과목은 '영어능력검정시험', 한국사과목은 '한국사능력검정시험'으로 대체